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2025. 3. 6. 제정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1. 총론

- (제정 목적)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방송국 드라마 촬영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 훼손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수립되었다.
- (적용 범위) 동 가이드라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행위) 동 가이드라인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추가 지침) 동 가이드라인 이외, 해당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타법 허가) 드론 촬영 등 타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 (기타 사항)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에 관해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 (지침 준용) 시·도지정문화유산 대상 촬영 허가 또는 관련 지침 마련 시,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II. 촬영 개시 전

II-1. 촬영 허가 신청

- (제출 서식)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개시 15일 전까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와 행위 계획서 및 서약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협의 후 촬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촬영 계획) 행위 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촬영명, 촬영 대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일정별 촬영내용,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 촬영 장비 반입 목록
- (촬영 일시) 촬영 행위 계획서 상에 일자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촬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집중촬영시간)을 별도 명시한다.
- (촬영 목적) 촬영 행위는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안전 요원)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행위 전체 과정의 관리 감독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 요원(전담 안전 요원)을 둘 수 있다. 단,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 안전 요원을 1인 이상 선정,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요원의 자격은 문화유산(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전공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한다.

II-2. 촬영 허가

- (허가 조건) 촬영 허가 시 아래 조건을 추가한다.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아래 조건 외에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행위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촬영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화기 사용을 금하고, 문화유산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촬영 허가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드론 촬영) 드론의 이·착륙 장소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사전 협의를 얻은 장소에서 운영해야 하며, 문화유산 내 드론의 이·착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화유산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촬영을 한다.

II-3. 촬영 허가 통지

-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 촬영 개시 전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III. 촬영 중

- (행위 금지) 문화유산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 촬영을 위해 무대장치 등 별도 시설물을 설치·가공하거나 문화유산에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문화유산 표면을 닦는 행위, 문화유산에 물·알콜 등 액체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목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
 - 박석(薄石 : 평평한 돌)에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으며,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소형 촬영장비는 충분한 안전장치 구비 후 반입한다.
 -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과 1m 이상 떨어져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출입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촬영 장소가 아닌 문화유산 및 부속 시설물, 화계(花階)에 출입하거나 주변의 식물 및 시설물을 만지지 않는다.
 - 문화유산 내에서 요리, 식사, 음주가무를 금지한다.
- (반입 불가) 아래 사항은 반입 불가하며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 문화유산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 우마차, 마필 등 기타 동물 등
 -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 (준수 사항) 문화유산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문화유산 내 건물 또는 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촬영 시 질서 유지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촬영 중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항공 촬영 시 드론 상태 확인과 정비에 각별히 유의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촬영 종료와 동시에 모든 촬영 장비를 즉시 철거하고 청소 등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 **(관람객 보호)** 관람객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관람객 이동 동선 밖에서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차단봉 등 이동식 경계라인을 표시한다.
 - 필요 시 전담 안전 요원이 관람객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위 보완)** 세부사항은 허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촬영 과정에서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제재가 있는 경우는 지시 내용을 보완하여 촬영을 개시한다.
- **(현장 입회)** 문화유산 촬영 시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특히 중점 촬영시간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입회 하에 촬영을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현장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 **(허가사항 취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촬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IV. 촬영 종료 후

- **(현장 확인)** 촬영 종료 후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의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에 앞서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촬영 종료 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해설사 또는 지역 문화유산 돌봄단체에 현장 확인의 협조를 의뢰(요청)할 수 있다.
- **(행정명령)** 촬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문화유산의 훼손 사례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한다.
- **(처벌 조항)** 촬영 행위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에는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같은 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적용한다.

참고 1

촬영 허가신청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6.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소재지(보관 장소)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	부터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 술 답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유산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참고 2

촬영 행위 계획서

촬영명		
신청자 성명		
신청자 연락처		
촬영대상 (촬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일정별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 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자	명	※10인 이상인 경우 안전요원 명단 제출
촬영 장비 반입 목록		

* 별첨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위치도, 배치도(촬영경계, 장비 및 인력배치 등)

문화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신청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였으며 문화유산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신청인) : (서명)

연락처 :

주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촬영 허가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2. (중략)

-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시 처벌 근거

문화유산법 제4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화유산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